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방법 안내 (2025년 ver.)

र्माठे हेम्बि HomeTax 국세청 홈택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त्र्याठे इस्ट HomeTax " 회원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통하여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안내 임시페이지 6 연말정산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안내 간편인증 자세히보기 자주묻는 질문 원활 원활 원활 로그인 성명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연말정산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홈택스 (공제자료 조회/발급)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전체 동의 바로가기 바로가기 볼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자세히보기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필수) 자세히보기 (Σ) * 연말정산 서비스는 1.15.(수) ~ 1.20.(월)에 이용자가 많으므로 1.21.(화)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mark>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mark> * 연말정산 이용자가 집중되는 1.20.(월), 09시부터 18시까지는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홈택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령보기 > 국제사업서에 1 10 문의하세요! 국제대장도전에서 🚺 🔁 💍 에 문의하세요!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순서]

홈택스(hometax.go.kr) 임시페이지 화면 중 좌측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버튼 클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전체 동의> 클릭 → 홈택스 로그인

③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버튼 클릭

[순서]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0명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양가족 공제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일괄제공 조회/취소 이동
 일괄제공 조회/취소 이동
 일괄제공 서비스 언내

 ·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월(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홍극여 500만원)을 초과 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월(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홍극여 500만원)을 초과 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환제공 요건에 따라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외요비 여당 자녀라도 요건에 따라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업전간소화 서비스 올해 많이 변경되는 사항은 FAQ를 참고해 보세요.
 연업전간소화 소득 지원
 연업전간소화 서비스 올해 많이 변경되는 사항은 FAQ를 참고해 보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전에 몇가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간소화

⑤ 한번에 조회하기 클릭 → 내려받기 클릭

④ 귀속년도 2024년 / 개인정보 공개함 / 비밀번호 설정안함 체크

[순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글 연말정산

🕞 간소화자료 제출 🛛 😅 예상세액 계산 🕸 🥪 공제신고서 작성

⑥ <전체 선택> 클릭 → <PDF로 내려받기> 클릭해서 PDF 파일 저장하기 *** 위 이미지와 다른 항목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 PDF가 미검증 표시가 될 경우 꼭 읽어주세요			노화자료 제출 🛛 🖅 예상세액 계산 🗍 🕞 공제신고서 작성
귀속년도 2024년 ~	1월 2월 3	☞ 내려받을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전체 선택 초기화	c	한번에 조회하기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소득기준초과	건강보험/고용보험		내려받기 인쇄하기 점자받기
		국민연금 🗸	보험료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건강/고용보험	의료비 🗸	교육비		4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		용 전에 꼭 확인 해 주세요!
의료비	교육비	현금영수증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철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수가ㆍ수정 세울안 '요. 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에 제출하셔야 돼요. -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
		장기집합투자증권/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현금영수승	개인연금저죽/9	기부금 🗸	장애인증명서		H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해요.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급여 조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올해부터 처음 제공해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 · 소상공 공제부금				일 않아요. 이전에 사망한 부양 가족의 자료는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닫기	PDF로 내려받기		제공하지 않아요.

<부양가족 요건>

** 부양가족 공제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확인한 이후 부양가족 신청을 진행하세요.						
- 부부가 자녀 를 중복하여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의료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음(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① 소득 요건						
-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						
② 나이 요건						
-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						
- 20세 이상의 자녀라도 요건에 따라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음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클릭

[순서]

न्यार्थेडेष्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Q 나의 홍택스 전체						
계산서·영수증·카드 > 증명·등록·신청 >	세금신고 ~ 납부·고지·환급 ~ 지	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상담·불복·제보 ~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알림	나의 세금신고 나의 납부	나의 민원				
·····································	ê	ê	ê				
★★★ 님 반갑습니다.	카드를 클릭하면 '국세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박세영님께 추천하는 메뉴 입니다.							
세금납부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국세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순서] ② <본인인증 신청> 클릭 → 자료 조회자(본인) 및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개인정보 입력 ③ 자료 조회 동의 체크박스 클릭 → <신청하기> 클릭

4.... . 2 미성년자녀 신청 온라인 신청 세무서방문 신청 본인인증 신청 팩스 신청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 자료 조회자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 조회자 성명을 입력하세요 앞자리 6자리 -뒷자리 7자리 🐼 • 자료 제공자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제공자 성명을 입력하세요 앞자리 6자리 -뒷자리 7자리 🔊 동의범위 *자료제공자와 조회자와의 관계 은(는) 의 선택 2024년 🗸 부터 이후연도 자료 \sim 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가)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 주세요.

자료제공동의 신청 제공동의 현황 조회 제공동의 진행상황 (팩스신청, 온라인신청) 제공동의 취소 신청





→ 자료 조회자인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 신청하면 됨

-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
- → 위 이미지 내 **본인인증**은 근로자가 아니라 **부양가족(부모님 등) 명의의 인증서 등**을 말함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자료 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함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